

목 차

【투자설명서 요약】

-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종류
 4. 자산운용회사
-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투자실적 추이
- III. 매입·환매 관련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매입·환매 절차 등

【투자설명서 본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종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투자실적
-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 1. 투자전략
 - 2. 투자위험
 - 3. 투자대상
 - 4. 투자제한
-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1. 자산의 평가
 - 2.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1. 투자증권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 2.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I. 자산운용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업무
 -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 4. 운용자산 규모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II. 판매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 업무
- III. 수탁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 업무
- IV. 일반사무관리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 업무
- V. 채권평가회사
 - 1. 회사의 개요
 - 2. 주요 업무

제4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I. 수익자의 권리
 -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 2. 잔여재산분배
 -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4. 손해배상책임
 - 5. 재판관할
 -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II. 공시
 - 1. 정기보고서 및 보고서
 - 2. 수시공시

< 요약 >

이 투자설명서 요약은 본 투자설명서 전체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각 부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투자자들께서는 본 투자설명서 본문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 투자신탁의 개요

- | | |
|-----------|-----------------------------|
| 1. 명칭 |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주식투자신탁1호 |
| 2. 신탁계약기간 |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
| 3. 종류 | 주식형 증권간접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
| 4. 자산운용회사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

II. 투자정보

-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펀드로서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80%이상을 투자하며, 주식 투자시 시가 총액(각 종목의 상장된 주식 전체를 시가로 평가한 총액) 상위 우량주와 배당 성향(기업의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배당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배당수익을 얻으면서도 주가 상승시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필요할 경우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적인 헤지 또는 추가수익 획득을 위하여 현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 전략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위험은 시장위험 중 주식가격 변동위험(주식 시장의 변동 또는 개별 기업의 실적 변화 등에 의하여 주식의 가격이 등락할 수 있는 위험), 파생상품 관련 위험(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만으로 거래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등입니다. (신탁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상황의 중요도 순임), 위험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p.16)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수익증권을 매입할 경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의 투자원본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함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나, 변동성이 일반적인 주식보다 적은 경향을 보이는 고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므로 6등급의 위험(p. 8 예시 표 참조)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주식투자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고객에게 적합합니다.

5. 투자실적 추이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05.12.07 ~ 06.12.06
투자신탁	17.50%

- * 당 펀드는 운용전략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적절한 벤치마크가 없음
- * 상기 수익률은 연환산 기준임

III. 매입·환매 관련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비용	선취 판매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Class: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 ■ C1 Class: 없음 	납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Class: 없음 ■ C1 Class: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기타	-	-
	합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Class: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 ■ C1 Class: 환매수수료-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납입시 환매시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65%	3개월 단위
	판매회사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Class: 순자산총액의 연 0.90% ■ C1 Class: 순자산총액의 연 1.9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2%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	사유발생시 지출
	기타비용*	투자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등	
	총 보수·비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Class: 순자산총액의 연1.60%+ 기타비용 ■ C1 Class: 순자산총액의 연2.60%+ 기타비용 	

※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제1기(2005.12.07~2006.12.06) 동안의 기타비용 비율은 0.033% 수준임

2.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등(2006.11.30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 매입·환매 절차 등

1)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입 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오후 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오후 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판매기준

- A1 Class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함
- C1 Class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3) 환매

수익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환매 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자가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지급
- 수익자가 15시(오후3시) 경과후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지급

■ 환매수수료

- A1 Class 수익증권: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 C1 Class 수익증권: 환매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징구함

4) 투자신탁의 이익 등의
분배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들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한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익분배금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본 문 >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 | | |
|---------------|--|
| 1. 명칭 |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주식투자신탁1호 |
| 2. 신탁계약기간 |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
| 3. 종류 | 주식형 증권간접투자기구,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
| 4. 자산운용회사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
| 5. 최초설정일 및 연혁 | 2005.12.7 최초설정 |
| 6. 수탁고 추이 | 350억 원 (2006.11.30 현재, 순자산기준) |
| 7. 해지사유 |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를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II. 투자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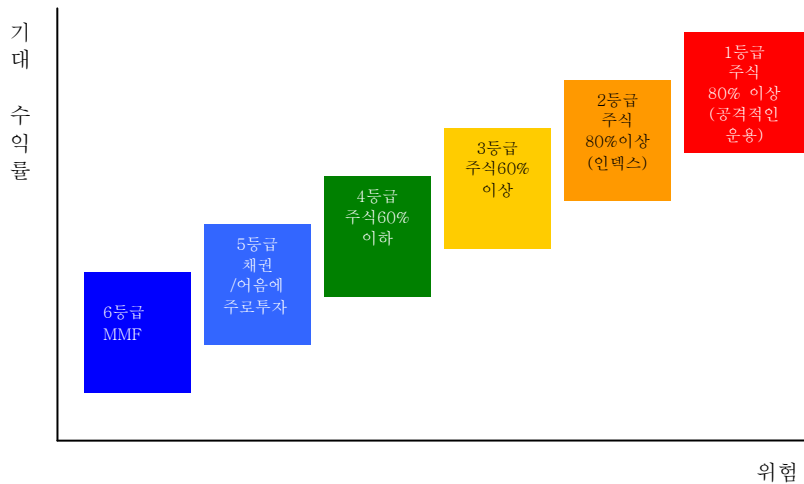
- | | |
|------------|--|
|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펀드로서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u>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u> |
| 2.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80%이상을 투자하며, 주식 투자시 시가총액(각 종목의 상장된 주식 전체를 시가로 평가한 총액) 상위 우량주와 배당성향(기업의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배당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배당수익을 얻으면서도 주가 상승시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필요할 경우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적인 헤지 또는 추가 수익 획득을 위하여 현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 전략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u> |
| 3. 주요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 원인이 되는 주요 위험은 신탁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상황의 중요도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거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가격 변동위험: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주식시장은 그 등락을 거듭하며 이는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주식 시장의 변화와 별도로 개별주식은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2. 파생상품 관련 위험: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p.16)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수익증권을 매입할 경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의 투자원본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함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나, 변동성이 일반적인 주식보다 적은 경향을 보이는 고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므로 6등급의 위험(p. 8 예시 표 참조)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예시)

1등급	극히 높은 위험	주식에 80% 이상 투자하며 주식 시장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운용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2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에 80% 이상 투자하며 주식 시장 수준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덱스 운용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3등급	높은 위험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경우 (주식에 80% 이상 투자하나, 고배당주 등 변동성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
4등급	중간 위험	주식에 60%이하 투자하는 경우
5등급	낮은 위험	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단기 현금성 자산위주로 운용하는 경우(MMF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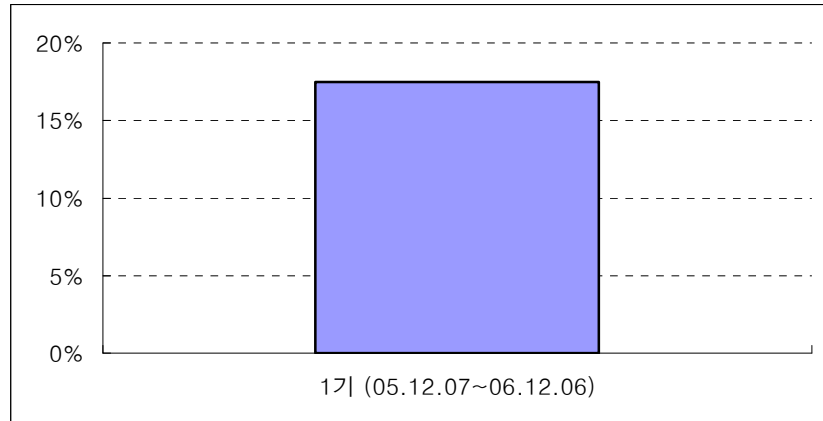
5. 투자실적

1) 연도별 수익률추이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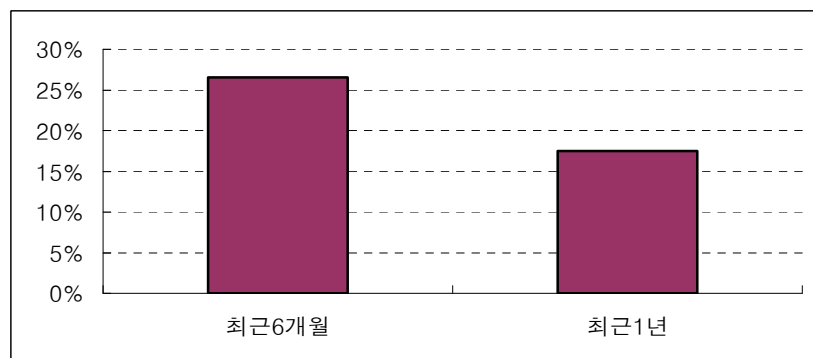
기간	제1기 (05.12.07 ~ 06.12.06)
투자신탁	17.50%

* 당 펀드는 운용전략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적정 벤치마크가 없음



2) 연평균 수익률

연도	최근6개월 (06.06.05~06.12.06)	최근1년 (05.12.07~06.12.06)
투자신탁	26.57%	17.50%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비용	선취 판매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Class: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 ■ C1 Class: 없음 	납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Class: 없음 ■ C1 Class: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기타	-	-
	합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Class: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 ■ C1 Class: 환매수수료- 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납입시 환매시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65%	3개월 단위
	판매회사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Class: 순자산총액의 연 0.90% ■ C1 Class: 순자산총액의 연 1.9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2%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3%	
	기타비용*	투자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등	사유발생시 지출
	총 보수·비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Class: 순자산총액의 연1.60%+ 기타비용 ■ C1 Class: 순자산총액의 연2.60%+ 기타비용 	

※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제1기(2005.12.07~2006.12.06) 동안의 기타비용 비율은 0.033% 수준임

※ 기타비용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기타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 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 ①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 ②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 ③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④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⑤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⑥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⑦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 ⑧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 ⑨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

- ①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만원)

투자기간	1년기	3년기	5년기	10년기
A1 Class	26.14	61.09	99.62	214.14
C1 Class	26.65	84.01	147.26	335.20

* 종류A1 수익증권의 1년차는 선취 판매수수료 포함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기타비용 제외)을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므로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등(2006.11.30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입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후 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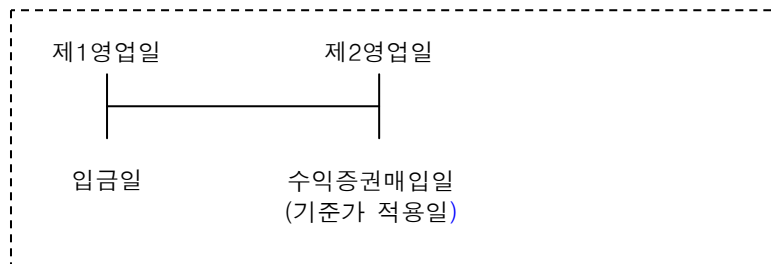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2) 오후 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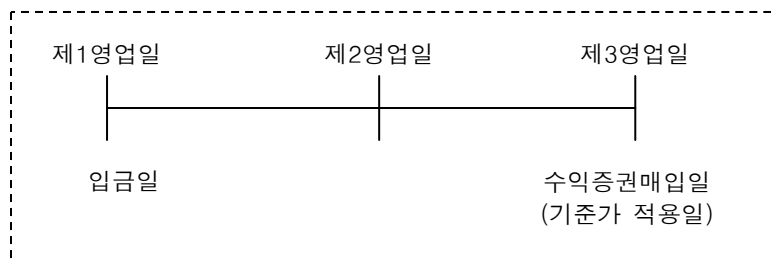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3) 다만, 최초설정시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 적용

(1) 15시[오후3시] 이전에 납입시



(2)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납입시



주1)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판매기준

- A1 Class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함
- C1 Class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2. 환매

1) 환매관련 주요사항

①수익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③ 약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수익증권 환매시 적용기준가격 및 환매금의 실수령일>

구 분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15시(오후3시) 이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오후3시) 이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주1)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환매수수료

- A1 Class 수익증권: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 C1 Class 수익증권: 환매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징구함.

3) 환매의 청구, 환매가격 및 환매 방법 관련 기타사항

- ①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②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⑥ 판매회사(약관 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⑦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증권의 환매
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영업일 전전영업일 (15시[오후3시] 이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5) 수익증권의 환매
연기

약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한다)가 약관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의 취소(정정)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경과 후 매입청구 또는 환매청구는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가능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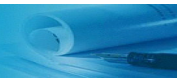
- 이익분배의 원칙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 이익분배의 절차 :

-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들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2) 이익분배금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3)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수익자들의 선택권 :

- 1)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2)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80%이상을 투자하며, 각 부문의 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식 투자전략

회사는 주식 투자시 시가총액(각 종목의 상장된 주식 전체를 시가로 평가한 총액) 상위 우량주 와 배당수익률이 뛰어난 종목 위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얻으면서도 주가상승기에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용할 것입니다.

나. 채권 투자전략

회사는 자산을 다음과 같은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채권 투자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 국공채, 지방채, 특수채
-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사모사채 제외)

다. 파생상품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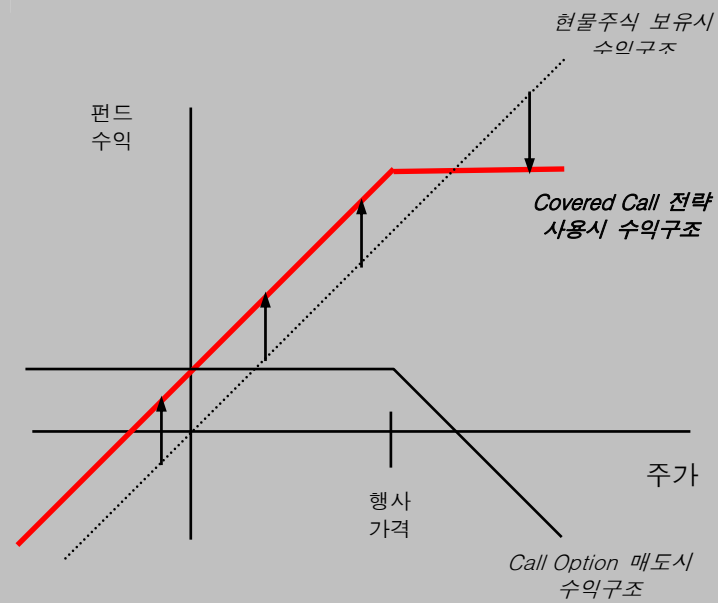
회사는 필요한 경우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적인 헤지 또는 추가수익 획득을 위하여 현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자산운용회사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커버드콜 투자전략

현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행사가격이 현재주가수준보다 높은 행사 가격의 콜옵션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여 콜옵션프리미엄을 꾸준히 확보하는 전략을 말하며, 동전략 실행시 주가추이에 따른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가 급등시: 현물 주식 보유 부분에서 큰폭의 수익이 발생하나 콜옵션 매도 부분의 손실로 인하여 수익률 상승이 일정수준으로 제한됨
- 주가가 완만히 상승하거나 횡보할 경우: 주가상승으로 인한 수익 이외에 콜옵션 매도시 얻는 옵션 프리미엄 상당액만큼의 수익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 주가 하락시: 콜옵션 프리미엄 수입으로 현물 주식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부분적인 방어가 가능함



2.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 원인이 되는 위험은 신탁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상황의 중요도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거될 수 있습니다.

가. 시장위험

1) 주식 가격 변동 위험

- 시장위험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율,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종목위험

개별주식은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만, 회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2) 금리 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 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 파생상품 관련 위험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헷지전략과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하게 움직일 경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현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 신용위험

1) 채무 불이행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은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 기타 위험

1) 순자산가치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시점과 환매대금이 확정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시장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이 투자자가 환매청구시점에 예상한 순자산가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 :

보유자산의 현저한 거래부진이나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 휴장, 거래정지, 부도, 대량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환매에 응할 수 없을 경우 환매가 연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해 투자신탁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수익증권을 매입할 경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의 투자원본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함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주식	80% 이상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채권	20% 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 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는 제외한다)
어음	20% 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자산유동화증권	2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금리스왵거래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수익증권등	5% 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등
투자증권의 대여	50%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투자증권의 대여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 기준 신탁재산의 15% 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 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 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보유채권의 50%이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수탁회사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단기대출(30일)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 상품)	○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 운용
투자비율 적용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4) 및 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초과인 경우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주식 내지 금리스왵거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되는경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77 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 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6 조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3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년 3 월·6 월·9 월 12 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3 월간 적용한다.
-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4)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5)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 부터 매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6)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 7)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 8)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가. 1) 내지 7)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 월간은 “4. 주요투자대상 및 투자계획”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투자한도, 가. 2)본문 및 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2) 비상장·비등록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3) 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 2 조제 8 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이 발표하는 가격
 - 4)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일 10 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합니다)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5) 비상장채권(4)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합니다): 2 이상의 채권평가 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6)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 7) 간접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8) 외국간접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9)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10)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상기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의 평가방법 및 가.규정에 의한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합니다.

2.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순자산총액" 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산정주기	매일 산정
공시시기	판매 회사의 영업개시 시간 전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판매 회사 영업점, 운용회사(http://www.midasasset.com) · 판매 회사 (http://www.kbstar.com , http://www.keb.co.kr , http://www.sogeko.com , http://www.dgb.co.kr , http://www.nhis.co.kr),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투자증권 거래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2. 장내파생상품 거래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 선정기준
주식	1. 평가방법 매월 각 위탁매매 대상 중개회사를 평가하여 점수화한 후 순위별로 위탁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주식운용역, 애널리스트 3. 평가항목 애널리스트의 정보제공, 탐장주선, 세미나 주최 등 당사 운용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 활동
채권	1. 평가방법 매 분기 중개회사에 대해 선정된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중개회사의 순위 결정/ 각 중개회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위탁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채권운용역 3. 평가항목 시장상황 및 호가의 정확성, 거래체결 빈도, Research 자료제공 여부, Back Office 업무처리 능력

구분	중개회사 선정기준
주식	1. 평가방법 매월 각 위탁매매 대상 중개회사를 평가하여 점수화한 후 순위별로 위탁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주식운용역 3. 평가항목 시장관련 정보제공 등 운용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과 매매체결의 신속/정확성
채권	1. 평가방법 매분기 중개회사에 대해 선정된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중개회사의 순위 결정/ 각 중개회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위탁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채권운용역 3. 평가항목 시장상황 및 호가의 정확성, 거래체결 빈도, Research 자료제공 여부, Back Office 업무처리 능력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02) 3787-3500
회사연혁	1999.02.01 회사설립등기(납입자본금 70억원) 1999.03.10 자산운용업 등록(금융감독위원회) 1999.07.07 상호변경: 마이다스자산운용(주)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2004.02.01 무상증자(납입자본금 100억원)

2. 주요 업무

1) 업무 범위

- 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 나. 투자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지시
- 다.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업무
- 라. 투자자문 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2) 의무 및 책임

가. 자산운용회사의 의무

- 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③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자산운용회사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나.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 ①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 위탁

해당사항 없음.

3. 최근 2 사업
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요약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7기 (2005.3.31)	제8기 (2006.3.31)
유동자산	115	145
고정자산	42	91
자산총계	156	236
유동부채	4	28
고정부채	4	5
부채총계	8	33
자 본 금	100	100
이익잉여금	48	103
자본조정	-	-
자본총계	148	203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손익계산서		
항목	제7기 (2005.3.31)	제8기 (2006.3.31)
영업수익	65	146
영업비용	39	60
영업이익	26	85
영업외수익	-	-
영업외비용	-	-
경상이익	26	85
특별이익	-	-
특별손실	-	-
세전순이익	26	85
당기순이익	18	62

4. 운용자산규모
(2006.11.30 기준,
단위:억좌,
순자산기준)

종류	주식형	혼합 형	채권 형	MMF	파생상 품	부동 산	특별 자산	계간 접	실물	총계
수탁고	21,225	8,846	2,655	-	3,963	1,466	113	-	-	38,268

5. 운용전문인력
에 관한 사항

구분	성명	출생년도	주요경력	운용펀드수	운용규모
주식운용본부	허필석	1967년	KAIST Techno MBA 장기신용은행/삼성증권	22	16,675
	이승준	1973년	Columbia Univ. Financial Math. 신영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		
	계상현	1974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KTB자산운용		

- 주1)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은 팀제에 의하여 운용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 주2) 상기 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판매회사의 개요

(가나다 순)

회사명	주소/홈페이지	연락처	회사연혁
교보증권(주)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26-4 www.iprovest.com	(02) 3771-9000	1949년 설립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www.kbstar.com	1588-9999	2001.11.1 설립
대한투자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www.daetoo.com	1588-3111	1968.12.16 설립 2003.06.05 사명 변경 (대한투자신탁증권(주) -> 대한투자증권(주))
(주)한국의외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www.keb.co.kr	1544-3000	1967년 설립
한불종합금융(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84 www.sogeko.com	(02) 777-7711	1977.7.13 설립
NH투자증권(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4동 891 www.nhis.co.kr	2004-4114	2006.2.24 창립

2. 주요업무

1) 업무 범위

- 가. 간접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
- 나.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 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 라.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 마.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
- 바.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가. 판매회사의 의무

-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② 자산보관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법령에 따라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서면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나. 판매회사의
책임

<판매행위준칙
등>

- ①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④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 ⑤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⑥ 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⑦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⑧ 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⑨ 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외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1544-3000
회사연혁	1967년 설립

2. 주요 업무

1) 업무 범위

- 가.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나.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다.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라.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가. 수탁회사의 의무

- ①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수탁회사의 책임

- ①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에이브레인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02-2014-2000
회사연혁	1999. 11. 03 설립

2. 주요 업무

1) 업무 범위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의무 및 책임

- ①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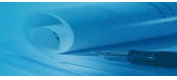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연락처	연혁
한국채권평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02) 3215-1400	설립일 : 2000. 6. 20 자본금 : 30억원
KIS채권평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층	02) 399-3350	설립일 : 2000. 5. 29 자본금 : 50억원

2. 주요 업무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 가.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할 것
- 나.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 다.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1) 의결사항

가.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수탁회사·신탁기간·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다.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라.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2) 의결권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증권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의결 방법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①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자산운용회사가 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①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

- 청구권 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나.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라.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1) 자산운용회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 ①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2) 회계감사인인 손해 배상책임
- 회계감사인인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결과 중요한 사항을 회계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①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http://www.amak.or.kr>),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인터넷

넷 (<http://www.midasasset.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다.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사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기간 종료

나.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 종료

다. 투자신탁의 해지

3)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기준가격계산서

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4) 자산운용보고서

①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수탁회사보고서

- ①수탁회사는 간접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후 2월 이내에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수탁회사가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수탁회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탁회사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1) 약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 ①자산운용회사가 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변경된 신탁약관에 따라 지체없이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②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에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나.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약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이상 공고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이하 “이의신청기간”이라 한다) 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수익자가 신탁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⑥이 약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2) 수시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http://www.midasasset.com>)·판매회사(판매회사 개요 참조)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가.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다.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라.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마. 이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바.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사.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아.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3) 의결권 행사

①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③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펀드명 : _____

판매일 : _____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투자자 확인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